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21
----------	-------

발의연월일 : 2025. 7. 29.

발 의 자 : 이병진 · 허성무 · 강준현
문대림 · 송재봉 · 이원택
박용갑 · 이상식 · 김 윤
소병훈 · 박상혁 · 윤준병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에 대해 보상금 지급 등의 보상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공항 소음 피해를 규율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비교할 때 보상 수준이나 지원 범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민·군 복합공항 주변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용비행장 관련 법률의 적용만을 받으며, 소음대책사업이나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질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와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국방부는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하고 있으나, 동일한 마을이나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도 구역이 상이하게 지정되어 보상 수준의 차이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아울러,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주민대표나 해당 지역단체장이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주민 간 형평성을 확보하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에 지역사회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나. 소음대책지역의 각 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도시지역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동일 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은 하천이나 도로 등 지형지물의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5년 이내라도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음대책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음영향도 조사주기 및 소음

대책지역 변경지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라. 국방부장관이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 대하여 소음대책사업계획 및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마.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소음대책사업”이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19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5의3.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19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소음영향도”을 “소음영향도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지역: 주민이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이 속한 필지의 경계. 다만, 아

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2. 비도시지역: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다만,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음대책지역의 주민대표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 변경 및 소음대책지역의 변경 지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기존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및 기준, 소음대책지역의 변경 지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을 “소음 방지, 소음피해 보상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소음대책사업

3의3. 주민지원사업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소음대책사업계획(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 이용시설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5. 그 밖에 공향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 및 지원사업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지역

안의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방음시설 설치사업
2. 텔레비전 수신장애 방지사업
3. 학교 냉방시설 설치사업

④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개발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소음대책사업”이란 군용 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u>
<u><신설></u>	<u>5의3.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 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19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u>
6. (생략)	6. (현행과 같음)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중양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u>소음영향</u> 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 ----- ----- ----- <u>소음영향</u> 도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지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른 경계-----

-----.

-----.

1. 도시지역: 주민이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이 속한 필지의 경계.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2. 비도시지역: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음대책지역의 주민대표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

<신 설>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

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 변경 및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지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기존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및 기준, 소음대책지역의 변경 지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
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
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
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4.·5. (생략)

③·④ (생략)

<신설>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① -----

----소음 방지, 소음피해 보상
및 주민지원사업-----

-----.

②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소음대책사업

3의3. 주민지원사업

4.·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소음대책사업의 계획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기
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소음

대책사업계획(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5. 그 밖에 공향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

치 및 지원사업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지역 안의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방음시설 설치사업
2. 텔레비전 수신장애 방지사업
3. 학교 냉방시설 설치사업

④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 설>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 (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제20조(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 2. (생략) <u><신설></u> 3. ~ 5. (생략) ② ~ ④ (생략)	<u>으로 정한다.</u> 제20조(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 원사업에 관한 사항</u>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